

#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인용된 근거법령 정비(안 제2조, 안 제3조)

- 제24조제5항제11호 ⇒ 제28조제5항제9호
- 제24조제5항 ⇒ 제28조제5항

나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 
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)

3. 근거법규 :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8조제5항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2009. 6. 15. ~ 7. 6)

##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”를 삭제한다.

제2조 중 “제24조제5항제11호”는 “제28조제5항제9호”로 하고, “대상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24조제5항”을 “제2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과·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”을 “부과·징수하고자 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점용한 자에 대하여는”을 “점용한 자에게는”으로 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부과·징수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도로점용허가)</b> 공작물, 물건, 기타의 시설로써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24조제5항제11호</u>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 <u>대상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(생략)</p> <p><b>제3조(점용료의 부과대상)</b> 도로점용료(이하“점용료”라 한다)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<u>제24조제5항</u>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·물건 기타시설의 신축·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.</p> <p><b>제5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)</b>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<u>부과·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</u>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<b>제6조(변상금 징수)</b>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<u>점용한 자에 대하여는</u>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&lt;삭 제&gt;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2조(도로점용허가)</b> -----</p> <p>----- <u>제28조제5항제9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대상</u> -----</p> <p><u>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조(점용료의 부과대상)</b>-----</p> <p>----- <u>제28조제5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5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)①</b> -----</p> <p>----- <u>부과·징수하고자 할 때에는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6조(변상금 징수)</b> -----</p> <p>----- <u>점용</u> -----</p> <p><u>한 자에게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71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9. 2(수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9. 7(월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09. 9. 17(목)

### 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인용된 근거법령 정비(안 제2조, 안 제3조)
  - ▶ 제24조제5항제11호 ⇒ 제28조제5항제9호
  - ▶ 제24조제5항 ⇒ 제28조제5항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 
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)

4. 근거법규 :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8조제5항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성낙팔)

-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
- 본 조례 제2조(도로점용허가)의 조문중 인용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“제24조제5항제11호”가 “제28조제5항제9호”로 변경되었으며
- 조례 제3조(점용료의 부과대상)의 인용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“제24조제5항”이 “제28조제5항”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과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